

2020.04.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이전가격에 미칠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0년 초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초기 중국발 부품·원자재 수급불안에 이어 글로벌 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국내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의 2020년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혹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가격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매우 고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조세팀과 이전가격팀에서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겪게 될 이전가격 관련 예상 문제점들과 그 선제적 대응 방안들을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아래의 분석 내용이 해외진출 국내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I.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문제점과 고려사항

1. 비교 가능성 분석에 대한 재검토와 정교한 차이조정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그 발현과 확산 그리고 진정의 시기가 서로 차이가 있고, 항공, 운송, 유통, 서비스 등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산업과 IT, 전자상거래 등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존재하는 등 산업 마다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부터 발생한 경기 악화의 시기와 범위가 개별기업, 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고 다양하므로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분석대상회사와 기존에 선정된 비교대상회사가 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하는지에 따라 각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대상회사와 분석대상회사 간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존 비교대상회사 중 비교가능성이 저하된 회사들을 교체하거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대상회사의 손익에는 나타나지 않는 유희 공장시설 등으로 인한 고정비 과다, 증가된 마케팅 비용, 재고 폐기 비용, 구조조정 비용 등과 같은 이례적인 비용이 분석대상회사의 손익에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석대상회사의 경우 선례가 없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비교대상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양자간의 차이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교가능회사들과의 합리적인 차이조정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위험의 유사성을 더 중요시하여 비교가능회사 선정을 위한 산업코드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 산업 별 영향의 범위와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코드의 확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석대상회사와 유사한 매출 감소 추세를 겪는 회사 또는 영업손실과 같은 재정위기를 겪는 회사들과 경제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높은 이익을 달성한 회사들에 대한 비교가능성의 검토 및 선택과 제외를 위한 검색기준 추가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손실거래에 대한 정당화

가. 불리한 경제여건에 따른 손실거래의 정당화에 대한 분석

이전가격관점에서 분석대상회사는 물론 많은 잠재적 비교가능회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경기침체를 유발했다 하더라도 각 기업들의 손실 발생 그 사실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즉, 독립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해당 손실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손실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회사 중 발생 비용에 적정 마진이 가산된 금액으로 보전 받는 낮은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의 경우 손실이 정당화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기 상황과 유사 또는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독립 기업도 역시 손실을 본다면 손실이 정당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 제반 상황 등과 관련하여 매우 자세한 분석이 요구되며, 경제분석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나. 새로운 관점에서의 산업 분석의 중요성

코로나19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전체 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유통업자 또는 용역 제공업자 등과 같은 해외 현지 자회사 보다 모회사의 재무 상황이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국적 그룹 내 회사들 간에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손실 발생 사유, 계약 조건, 그룹 간 각 회사들의 수행기능, 부담 위험, 사용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리한 경제여건으로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소비자 수요감소, 공급망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각 회사가 속한 자세한 산업분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타 회사들이 처한 상황 및 경제적 어려움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재무적 영향 분석

일반적으로 경제 침체시기에는 매출액은 감소하나, 고정비용은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증가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리스 계약을 통해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내지 않고서는 단기간 동안만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대상회사들의 재무수치와 분석대상자 간에 통상적인 차이 조정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사업기간 동안의 비교대상회사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자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을 조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무적 영향만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계량화하는 것도 손실거래를 정당화 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국적 기업 그룹 내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관점의 검토

경제적 악영향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의 특수관계자 간 금융거래들에 대해 재 검토가 필요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관계회사에게 자금 대여 또는 제3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지급보증을 용역을 제공을 해야 될 상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특수관계자간 대여 거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기존에 체결된 특수관계자간 대여거래의 이자율에 검토가 필요한지의 여부 또는 추가적인 대여거래를 함에 있어 현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등 많은 질문과 고민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도는 낮아진 기업에게는 기존의 이자율 보다는 부도 위험을 고려하여 좀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와 대출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는 대여이자율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나.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용역 제공 거래

특수관계자 간 자금 차입이 어려운 경우 제3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 경제상황 및 기업상황을 고려하였을 시 다소 높은 이자율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여이자율과 지급보증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거래당사자들의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기업의 재무상황의 악화가 예상되고 2019년과 2020년의 재무상태가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변화된 경제적 상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신용등급의 산출은 과거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어, 코로나19 영향 이전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할 관계사간 대여이자율 및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II. 특수관계 기업간 계약(Intercompany Agreement)에 대한 재검토

모든 특수관계기업간 이전가격 거래의 정상가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는 해당 이전가격거래를 수행하는 특수관계자간 체결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각 조항이 만약 독립기업들 간 체결된 계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특수관계자간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이전가격과세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한 무형자산 이전가격 및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부분의 강조 및 코로나19와 같은 비 정상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내용이 다시 한번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법개정에 따른 무형자산 이전가격의 강화 및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검토

최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무형자산이전가격거래 및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거래의 검토와 그에 따른 이전가격과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기업간의 계약서의 내용이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거래 위험의 부담과 이익 배분이 상업적 합리성에 상응하도록 계약서가 작성 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수관계 계약 간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독립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거래 당사자 중 한 회사는 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인해 재무적 손실이 예상되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 또는 정부로부터의 금지활동(예: 마스크 수출 금지 등)으로 인해 계약의 해석상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중대하고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경우 이를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이전 가격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당 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경제환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전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도시봉쇄, 이동제한 등의 Lock down이 진행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이 제한될 수 밖에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코로나19 사태를 원인으로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사례도 있어, 계약의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불가항력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 內 존재유무와 관계 없이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기인하여 계약서 수정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지불을 통한 계약의 종료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의 재협상 또는 수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3자간 이루어진 계약을 보면 계약 당사자 중 한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조금 불합리한 조건이라도 받아 주거나 기존 계약 당사자가 다시 사업적 안정화 단계에 오를 때 까지 유예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거래 상대방을 찾아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래 당사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세법원(Nestle Co. v. Commissioner, T.C. Memo 1963-14)에서도 상기의 개념 하에 특수관계자간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조항 등이 변경 또는 재 협상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여전히 정상가격 원칙을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III. 기존 APA 내용 재검토

APA를 기 체결한 기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중대한 수준으로 변화가 있음에도 APA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과세당국들과 재협상을 할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PA는 타결문에 Critical Assumption (주요전제조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승인기간 중에 대상거래와 관련한 시장 및 경제상황과 기업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것과 사전승인기간 중에 이전가격거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아래에서 APA 타결기업들이 APA의 결과를 준수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경제상황과 기업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Critical Assumption의 변화를 근거로 과세당국들과 APA 결과의 재협상 또는 일시적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IV. 맺는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막대한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고 정부당국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향후 세무조사의 확대를 선택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과세 정책방향을 볼 때 강화된 세무조사의 중심에는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은 약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이전가격과세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기존의 정상가격범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을 보다 정교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년도 분석 보다는 개별 연도 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의 낮은 이익 또는 손실이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조작으로 기인되는 것이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줄 증빙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분석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이전가격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미 체결된 APA의 재협상이나 특수관계기업간 체결된 계약서의 재정비 등을 통하여 다가올 이전가격과세위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울촌 국제조세팀과 이전가격팀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기업들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기업간 계약서의 개정, 이전가격정책의 재검토, 이전가격보고서의 작성 등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우수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울촌의 이전가격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최용환 변호사는 국제조세팀장으로 이전가격 전반 및 일본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김규동 미국 회계사**는 최변호사와 공동으로 국제조세팀장을 맡고 있으며 외국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동훈 미국 회계사**는 이전가격팀장으로 이전가격 전반과 국내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오영석 공인회계사**는 일본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CONTACT



최용환 변호사
02-528-5709
ywchoi@yulchon.com



김규동 미국 회계사
02-528-5542
kdkim@yulchon.com



하동훈 미국 회계사
02-528-5312
dhha@yulchon.com



오영석 공인회계사
02-528-5214
ysoh@yulchon.com



이경근 세무사
02-528-5238
kygelee@yulchon.com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0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